

## 화순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심사보고

#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'96. 4. 16. 홍이식 의원의 4인
- 나. 회 부 일 자 : '96. 4. 16.
- 다. 상 정 일 자 : '96. 4. 25. (제44회 제1차 운영위원회)

### 2. 제안 설명요지

- 가. 제안설명자 : 운영위원회 간사위원 양 동 복

#### 나. 제안이유

- '95. 7. 14. 제34회 임시회에서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의회상임위원회가 운영됨에 따라 의회운영을 운영위원회 중심으로 운영키 위하여 회의규칙을 개정,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,
- 3개 상임위원회에서 의회에 회부된 각종안건을 본회의 상정에 앞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.

#### 다. 주요내용

- 의사일정의 작성 및 변경시 의장은 운영위원회와 협의
- 의안의 발의나 집행부에서 제출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상위별로 검토
- 공개되는 회의록 내용을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공개 또는 배부
- 상임위원회간 연석회의가 필요할 때 가능토록 하고
- 예산결산안은 예결특위 심의전 회부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함.

### 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김재월)

- 본 회의규칙 개정은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각 상임 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므로 각 상임위원회 운영에 부합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이나 절차상에 문제점 없음.

- 운영위원회 설치 이전에는 의장중심의 의회 운영체제였으나 운영위원회 중심의 의회운영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모든 의회운영을 의장과 운영위원회간에 사전 협의토록 하였음.
- 의회에 회부된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였음.

4. 질의 답변 요지

" 생략 "

5. 토론요지

" 생략 "

6. 심사결과

『원안가결』

7. 첨부 : 화순군 의회 회의록 규칙중 개정규칙안

## 화순군의회의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

|    |  |
|----|--|
| 의안 |  |
| 번호 |  |

제출 년월일 : 1994. 4. 16.

제 출 자 : 홍이식 의원외4인

### 1. 제안이유

- '94. 7. 6 개정공포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우리군의회의에서도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 되었고
- 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(95. 7. 14) 의결로 3개 상임위 위원회가 설치된 바 있어 각종 의안접수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
-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도 상임위원회 운영에 적합 하도록 개정할 필요성이 대두됨.

### 2. 주요내용

- 의사일정의 작성 및 변경시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(조례 제13조, 제16조 2항, 제17조)
-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하되, 소관이 명백 하지 않을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소관위원회를 결정하고, 위원회에서 제출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다른 위원회에 회부 (조례 제20조)
- 의장은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언 자 및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배부하고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 할 수 있음. (제48조)

-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어 의견은 교환할 수 있으나 표결은 할 수 없음. (제55조의 2)
- 예산안 또는 결산서가 제출된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예비심사토록 한후 그결과가 보고되면 보고서를 첨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 
(제61조, 제65조)

## 화순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

화순군의회 회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3조 (개의) 본회의는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개의시를 정한다.

제16조 (의사일정의 작성)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.

제17조 (의사일정의 변경) 중 "의장이" 를 "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" 로 한다.

제20조 (상임위원회 회부) 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0조 (상임위원회 회부) ①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,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후 본회의에 부의 심사의결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, 폐회 또는 휴회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. 그러나 의원의 동의를 없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한다.

②의장은 부의할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,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하고 기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은 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.

③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의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당해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.

제48조 (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) 제1항중 "발언자" 를 "발언자 및 의회운영위원회" 로 한다.

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5조의2 (연석회의) 결정할 안건이 있는 소관상임위원회가 다른 상임위원회와 협의

가 필요할 때에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안건 내용을 서면으로 제시한 후 연석회의를 갖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. 다만 표결은 할 수 없다.

제6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61조(예산안 심의) ①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군수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후 의장은 이를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, 소관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.

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(이하 "예결위원회"라 한다.)에 회부하고 그심사가 끝난후 본회의에 부의한다.

③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, 상임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.

제6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65조(결산의 심사) ① 의회에 결산서가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,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.

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케 한 후 그 결과를 본 회의에 부의한다.

③ 의장은 결산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제61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신. 구문 대비표

| 현 행  | 개 정 (안)   |
|--|---|
| 제13조 (개의) 본회의는 본회의 의결 또는 <u>의장이</u> 그 개의시를 정한다.  | 제13조 (개의) - - - - -<br>- -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<br>여 - - - - -  |
| 제16조 (의사일정의 작성) ①생략<br><br>②신 설<br><br>③생 략  | 제16조 (의사일정의 작성) ①현행과<br>같음<br>②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<br>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<br>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<br>이를 결정한다.<br>③현행 2항과 같음.   |
| 제17조 (의사일정의 변경) 제적 의원<br>5분의1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<br>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<u>의장이 필요</u><br><u>하다고 인정할 때에는</u> 의장은 의사<br>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<br>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.<br>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 대하여는<br>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. | 제17조 (의사일정의 변경) - - - - -<br>- - -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- - -<br>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<br>- - - - -<br>- - - - -<br>- - - - - (중 략) - - - - -<br>- - - - -<br>- - - - - . |
| 제20조 (의안의회부) ①의장은 의안 이<br>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<br>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<u>본회의에</u><br><u>보고한 후 본회의에서 심사 의결함을</u><br><u>원칙으로 한다.</u> 그러나 의원의 동의<br>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<br>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           | 제20조 (의안의 회부) ① - (중략) -<br>- 본회의에 보고하여 소관 상임위<br>원회에 회부하여 그심사가 끝난후<br>본회의에 부의 심사의결함을 원칙<br>으로 하되 폐회 또는 휴회중에는<br>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<br>있다.                  |

## 신. 구문 대비표

| 현           행  | 개           정 (안)  |
|--|--|
| <p>로 특별위원회 (이하 "위원회"라 한다.)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한다.</p> <p><u>②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.</u></p><br><p>③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의장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.</p> <p>④ - ⑤ 생략</p> <p>제48조 (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) ①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방인에게 공개한다. 그러나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 <p>② - ⑤ 생략</p> | <p>그러나 - - (중략) - - - - -</p> <p>②의장은 부의할 안건이 어느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상임위원회 결정하고 기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관련이 있는 다른안건은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.</p> <p>③ - - - - - 다만 의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당해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.</p> <p>④ - ⑤현행과 같음</p> <p>제48조 (회의록 배부 및 공개) ① - - - - -</p> <p>- 발언자 및 의회운영위원회와 -</p> <p>- - - - (중략) - - - - -</p> <p>② - ⑤ 현행과 같음</p> |



### 신. 구문 대비표

| 현행   | 개정 (안)  |
|--|---|
| <p>&lt;신설&gt;</p> <p>제61조 (예산안 심의) <u>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되는 때는</u> <u>군수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후 의장은</u> <u>이의 심사기간을 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(이하 "예결위원회"라 한다)에 회부하고</u> <u>그 심사가 끝난후 본회의에 부의한다.</u></p> | <p>제55조의2 (연석회의) ① 결정할 안건이 있는 소관 상임위원회가 다른 상임위원회와 협의가 필요할 때에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 안건내용을 서면으로 제시한 후 연석회의를 갖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.<br/>다만 표결을 할 수 없다.</p> <p>제61조 (예산안 심의) ①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군수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후 의장은 이를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, 소관상임위원회는 예비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.</p> <p>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(이하 "예결위원회"라 한다.)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후 본회의에 부의한다.</p> <p>③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, 상임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.</p> |

### 신. 구문 대비표

| 현<br>행   | 개<br>정 (안)  |
|--|---|
| <p>제65조 (결산의 심사) <u>의회에 결산서가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없이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고 예결위원회의 심사가 끝난후 그 결과를 보고 받아 본 회의에 부의 한다.</u></p> | <p>제65조 (결산의 심사) ①의회에 결산서가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.</p> <p>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케 한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한다.</p> <p>③ 의장은 결산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제61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</p> |